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인 : 1997. 4. 18

제안자 : 김춘식의원의 7인

1. 수정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도에서 대부분 단양군 대강면 을산리 450-1번지의 37필지 1,148,733㎡ 및 위 지상건물 (18동) 1,863.26㎡의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것은
- 매각에 따른 제반 법률 검토와 재산적 가치 및 향후 활용등 종합적인 충분한 재검토가 있는 후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정 주요골자

“ 단양군 대강면 을산리 450-1번지의 37필지 1,148,733㎡ 및 위 지상건물 (18동) 1,863.26㎡ ” → 삭제 <(안) 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3)에 있어서 “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50-1번지의 37필지 1,148,733㎡ 및 위 지상건물(18동) 1,863.26㎡” 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변 경 (안)			수 정 (안)
(안) 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3) (㎡)			(안) 삭 _____ 제 _____
재 산 표 시			
지목	소 재 지	수 량
잡종지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50-1번지 37필지	1,148,733	
건물	위 지상건물(18동)	1,863.2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당 초)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19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특	취	토지			9	480,622.7	31,617,265	9	480,622.7	31,617,265
		건물			2	12,670.47	3,447,130	2	12,670.47	3,447,130
		기타	1	1	1,000,000			1	1	1,000,000
	매입	토지			1	440,797	23,000,000	1	440,797	23,000,000
		건물								
		기타	1	1	1,000,000			1	1	1,000,000
	교환	토지			8	39,825.7	8,617,265	8	39,825.7	8,617,265
		건물			1	11,347.47	1,847,130	1	11,347.47	1,847,130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	1,323	1,600,000	1	1,323	1,600,000
		기타								
분	취	토지			5	1,193,568	12,304,472	5	1,193,568	12,304,472
		건물			3	5,416.42	1,702,156	3	5,416.42	1,702,156
		기타								
	교환	토지			4	44,835	11,986,652	4	44,835	11,986,652
		건물			2	3,553.16	182,167	2	3,553.16	182,167
		기타								
	매각	토지			1	1,148,733	317,820	1	1,148,733	317,820
		건물			1	1,863.26	1,519,989	1	1,863.26	1,519,989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9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440,797	23,000,000				
	건물	1 건	1,323	1,600,000				
1	토지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오송신도시지구내)	440,797	23,000,000	-	오송 월드컵 경기장부지매입	충 청 북 도	충청북도 개발사업소
2	건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1,323	1,600,000	하반기	농협중앙회충북 지역본부에서 건물을 신축 도에 기부채납	충 청 북 도	회 계 과

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과표 또는 평가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수 희망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148,733	317,820				
	건물	1 건	1,863.26	1,519,989				
1	잡종지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50-1번지의 37	1,148,733	317,820	하반기	공공목적으로 활용이지난	단양축산업 협동조합	회 계 과
2	건물	위 지상건물(18동)	1,863.26	1,519,989	"	단양축협의 부지를 축진 전국적인관광 명소로 개발		

199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 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취득	토지 건물	8 건 1 건	39,825.7 11,347.47	8,617,265 1,847,130				
	처분	토지 건물	4 건 2 건	44,835 3,553.16	11,986,652 182,167				
1	취득	대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20,377.2 중 1,500	1,800,000	상반기	도청청사부지 공관부지등 행정재산확보	충 청 북 도	회계과
2		대지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3번지	6,115.7	1,895,000	"			
3		전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660-4번지와 5	2,937	738,000	"			
4		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4-4번지	4,114	473,000	"			
5		구거	충주시 용탄동 1093 번지와 2	1,119	104,000	"			
6		학교 용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	21,845	3,211,215	"			
7		건물	위 지상 건물(4동)	11,347.47	1,847,130	"			
8		학교 용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번지	12,775중 2,000	361,600	"			
9		학교 용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195	34,450	"			
10	처분	대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3-1번지와 2	28,629중 26,287	6,674,864	"	경찰청청사 부지확보	경 찰 청	회계과
11		건물	위 지상건물(16동)	2,583.5	36,050	"			
12		체육 용지	청주 흥덕 사직 798-1 번지와 1	2,251	316,472	"			
13	대지	청주 상당 내덕 344-53 번지와 3	11,368	4,751,824	"	충북체고. 청주농고. 진천고부지등 확보	충 청 북 도 교 육 청	회계과	
14	건물	위 지상건물(6동)	969.66	146,117	"				
15	학교 용지	진천 진천 신정 590-3 번지	4,929	243,492	"				

※ 면적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 77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84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법 제 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 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 에는 이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 2억5천만원이상) 이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구가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는 5천제곱미터 이상)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 101조(교환)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3미만 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1미만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또는 제 2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

충 청 북 도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충 청 북 도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시 행 규 칙
<p>제 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 77조 및 영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 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 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p> <p>5. 교환계약서(별지 19호서식)</p>